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가합571840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황인용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엘 태산

담당변호사 서민정

변론 종결2019. 5. 29.

판결 선고2019.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731,540원 및 그 중 999,865,770원에 대하여는 2018. 6. 30.부터, 999,865,770원에 대하여는 2018. 9. 30.부터 각 2018. 12. 4.까지 연 14.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모바일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일본국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2. 8. 12. 핀테크 결제, 헬스케어, 디지털마케팅, 모바일 서비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주식 3,690주를 총 2,999,597,31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C STOCK TRANSFER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의 지급 일정(PAYMENT SCHEDULE)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한편, 제1조 (d)항에서는 피고가 지급 기한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일자를 포함하여 연 14.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12018. 3. 31.(March 31, 2018)	KRW [999,865,770]	[1,230]
22018. 6. 30.(June 30, 2018)	KRW [999,865,770]	[1,230]
32018. 9. 30.(September 30, 2018)	KRW [999,865,770]	[1,230]

라. 피고는 2018. 4. 1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8. 3. 31.자 매매대금으로 일본화 99,644,795엔을 지급한 이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도 2018. 4. 10. C 주식 1,230주에 관하여만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9,731,540원(= 2018. 6. 30.자 매매대금 999,865,770원 + 2018. 9. 30.자 매매대금 999,865,770원) 및 그 중 2018. 6. 30.자 매매대금 999,865,77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인 2018. 6. 30.부터, 2018. 9. 30.자 매매대금 999,865,77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인 2018. 9.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12. 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4.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대금 1,999,731,540원 지급의무와 원고의 C 주식 2,460주 명의개서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는 C 주식 2,460주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조 (c)항의 문언1)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원고가 "주식매매대금 지급 일정에 규정된 기한의 일자에 각 분할지급액 전액을 수령한 후 즉시" 그에 해당하는 C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거나 명의개서 등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즉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원고의 C 주식 양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철

판사이승엽

판사강현준

1) "Delivery of Sale Shares. Upon receipt of the full payment of each installment amount on each due date provided for in the Payment schedule, Seller shall deliver to Buyer the share certificates representing the number of Sale Shares set forth in the column designated "Number of Sale Shares" opposite each due date of installment on the Payment Schedule, and such further instructions, consents, or instruments as the Company may require to

record the transfer of the Sale Shares delivered to Buyer on th books of the Company.